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연 월 일	2024.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결혼중개업체의 공시항목에 구체적인 소재 정보 등을 추가하고, 국제 결혼중개업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 등을 정비하여 '23년 결혼 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결혼중개업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체 공시항목에 업체의 현황 정보 및 행정처분 등 위법사항 추가

(안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 안 별지 제7호의2서식)

나. 국제결혼 중개업자 대상 교육 내용 강화 및 시수 확대 정비

(안 별표3)

다. 범죄경력조회 내용에 관련 구법 포함 명시(안 별지 제8호의2 및 3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내용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

3) 행정규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마. 전화번호

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에 한한다)

제6조의2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법사항

제7조제3항 전단 중 “제8조제7항”을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3의 교육내용, 시간, 비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과목	교육내용	시간	방법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직업윤리 -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 보호·구제	2	집합교육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해설 -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 (표준약관 준수, 유형별 피해사례 및 분쟁사례, 구제절차 등 포함)	1	집합교육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 <u>결혼중개업 관련 법령 해설</u> - <u>국적, 체류 등 관련 법령 해설</u> - 상담 이론 및 상담 실무 - 기타 결혼중개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집합교육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 국제결혼 당사국의 결혼 관련 법규 및 문화 -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	1	집합교육

비고: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습교육(사례해결 등)을 병행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 1호 라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국내결혼중개업체 ☐ 공시
[] 국제결혼중개업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이
의
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illegible]

※ 처분내용은 “영업정지 ○월 ○일”, “과태료 금액 ○○원”으로 적고, 위법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항 ---- 위반”으로 적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을 기 준으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결 혼중개업체 공시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시 ·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 ----- ----- ----- ----- ----- ----- ----- -----.
1. 결혼중개업체의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다. (생략) 라. 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까지로 한다) <u><신 설></u> <u><신 설></u> 마. (생략)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한다) 마. 전화번호 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 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현행 마목과 같음)
2. 결혼중개업체의 최근 3년 이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나. (생략) <u><신 설></u>	2.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위법사항

제7조(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
----- 8조 제8항-----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연 락 처	(02) 2100 - 6370